

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4-1452호

2024년 자율적 간판개선사업 추가 지원계획 공고

불법광고물 정비 유도 및 불법 광고물 등의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한 '2024년 자율적 간판개선사업'의 추가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8. 5.

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

□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2024년 자율적 간판개선사업
(소규모 자영업자 LED 간판 설치 지원)
- 신청기간 : 2024. 8월 ~ 11월(예산소진시까지)
- 사업내용 : 불법·노후 간판철거 및 규격에 맞는 LED 간판 설치 지원
 - 지원대상 : 영업장 면적 133㎡ 미만의 관내 자영업자
 - 지원금액 : 업소당 벽면이용간판 1개 기준, 최대 130만원 지원

※ 지원금 초과 비용은 광고주(업소주) 자부담
- 간판업체 선정 : 광고주(업소주) 자율 선택 (**구로구 옥외광고사업자로 한정**)
※ 구로구 옥외광고사업자 1업체 당 연간 최대 10개소까지만 간판개선 제작설치 가능

□ 지원 대상

- 아래 해당하는 '영업장 면적 133㎡ 미만의 관내 자영업자'
 - 신규 업소를 개업하고자 간판을 제작·설치할 경우
 - 업종 변경, 영업장 이전으로 간판을 신규 제작·설치할 경우
 - 기존 영업중인 사업자가 불법·노후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할 경우
(기존 업소는 노후불법 간판을 소유한 업소이며, 불법광고물을 전부 정비하여야 함)
- ※ 단, 기준일자(2023. 11. 1.) 이후 개업, 영업장 이전, 업종 변경 사업자만 해당

○ 지원 제외 대상

- ▶ 구로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간판을 교체한 사업자(보조금 중복지원 불가)
- ▶ 옥외광고사업자가 본인의 광고물을 제작·설치할 경우
- ▶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사업자
- ▶ 불법영업(무허가) 행위 업소
- ▶ 휴·폐업 중인 사업자
- ▶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
- ▶ 무점포 사업자(사업장 주소지가 아파트,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)

□ 지원 기준
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, 시행령, 서울시 조례, 구로구 조례, 광고물등 표시방법 고시, 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」 등에 적합한 간판 설치
-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**불법 광고물 일체 철거 및 교체간판 외 추가설치 불가**
- 옥외광고심의위원회 **심의 후 설치**(심의 전 간판 설치 시 지원 불가)

□ 지원 절차



□ 지원대상자 신청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4. 8. 5. ~ 11. (예산소진시까지)
- 접수방법 : 방문 접수(가로경관과)
 - 접수처 : 가로경관과(구로구청 본관 4층) 광고물관리팀(02-860-2970)
- ※ 단, 간판 설치 전 소심의 신청은 메일 접수(guroad@guro.go.kr) 가능

○ 제출서류

※ 신청서는 구로구청 홈페이지 ‘고시 공고’ 란에서 다운로드 가능

<간판 설치 전 - 간판설치 지원사업 및 옥외광고 소심의 신청서>

- ▶ (붙임3) 2024년 자율적 간판개선사업 LED 간판 설치 지원 및 소심의 신청서 1부
- ▶ 광고주(업소주)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(신고)증 사본 1부
- ▶ 설계도, 시방서(설명서), 컬러시안, 설치 전·후 시뮬레이션 각1부
- ▶ 영업장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부동산 계약서, 건축물대장 등) 사본 1부

<간판 설치 후 - LED 간판 설치 보조금 신청서>

- ▶ (붙임4) 2024년 자율적 간판개선사업 LED 간판 설치 보조금 신청서 1부
- ▶ 광고주(업소주)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
- ▶ 간판 설치 전·후 사진 1부
- ▶ 설치비용 내역서 1부 (광고물의 사양, 수량, 가격 등이 명시된 견적서)
- ▶ 설치비용 지급증빙(카드 결제 전표 또는 세금계산서) 1부
- ▶ (붙임5) 청렴이행서약서 및 (붙임6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각1부
- ▶ (붙임7) 보조금 실적보고 및 정산서 1부

- ※ 설치한 간판이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허가(신고) 대상일 경우 추가제출
- (붙임8) 옥외광고물 신고·허가 신청서(안전점검 수수료 발생)
 - (붙임9) 건물주승낙서

□ 신청 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 사항

- 신청서 등을 허위 작성하였거나,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
 - 소심의 결과 통보 이전에 간판을 설치한 경우
 -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간판을 설치한 경우
 - 기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지 않거나 불법광고물 추가 설치한 경우
- ※ 보조금 지급 후 불법간판 적발시 보조금 환수조치

□ 기타문의 : 구로구 가로경관과 광고물관리팀 (☎02-860-2970)